

별첨1

채용 가산점수 기준

□ 가점

대상	관련 법령 등	가산비율	제출증빙 서류
취업 보호 대상자 (보훈)	●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제31조 ●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제35조 ●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제22조 ●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제24조 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 ●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6조의2	관련법률에 따라 5~10점	취업보호 대상자 증명서
장애인	●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 제1항	5점	장애인 증명서

※ 가점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점이 높은 1개에 한하여 적용